

『구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9월 3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0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10월 10일

제1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상 우

나. 제안이유

- 신설되는 장애인체육관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명 「구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」를 「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함.
- 시설의 종류에 장애인체육관을 추가함(안 제2조)
- 장애인을 우선하도록 이용대상 및 대상간 우선순위를 정함(안 제5조)
- 사용료의 부과 및 면제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함(안 제6조)
-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및 제8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, 제16조 및 제59조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및 제44조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제21조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및 제21조의2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성 애

○ 본 조례안은

- 신설되는 장애인체육관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것으로써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먼저, 조례명 「구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」를 「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하고, 안 제2조는 시설의 종류에 장애인체육관을 추가함을, 안 제5조는 장애인을 우선하도록 이용대상 및 대상 간 우선순위를 정하였고, 안 제6조는 사용료의 부과 및 면제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며, 안 제7조 및 제8조는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○ 검토결과

▪ 본 조례안은

장애인 스포츠 재활과,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,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역점을 두고자 설립한 장애인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 및 면제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